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504
----------	-----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6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심현정,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항을 추가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조로 이동하여 재규정함(안 제6조제12호 삭제)

나. 적성 검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직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한 저연차공무원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10. 16. ~ 10. 24.(의회사무과-4446), 표참고

의회원안	집행부의견(행정담당관)	검토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u>자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u> 13.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용)
제6조의2(자연차공무원 지원) 군수는 자연차공무원(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4. <u>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u> 5. <u>자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u>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자연차공무원 지원) 군수는 자연차공무원(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4. <u>자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u> 5. <u>그 밖에 군수가 자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사유 - 조례안 제6조의2 제4, 5호 삭제에 대한 사유 : 자연차공무원 지원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미의 해석이 어려움→ 제6호(그 밖에 군수가 자연차~) 조문으로 기타 사업 추진 가능함 - 조례안 제6조 제12호 삭제 및 검토안 제6조의2, 제4항 신설에 대한 사유 : 동일 내용 조항 재분류(자연차공무원 지원) 및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저연차공무원 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4.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12. 자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u>	<u><삭 제></u>
<u>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사업</u>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6조의2(자연차공무원 지원) 군</u> <u>수는 자연차공무원(제2조제1호</u> <u>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u> <u>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u> <u>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u> <u>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u> <u>원 할 수 있다.</u>
	<u>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u> <u>사</u>
	<u>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u>
	<u>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u> <u>요한 교육</u>
	<u>4. 자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u> <u>안정 지원사업</u>
	<u>5. 그 밖에 군수가 자연차공무</u>

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의2(저연차공무원 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4.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은미의원
연락처	(033) 330 -2503